

인도네시아

수입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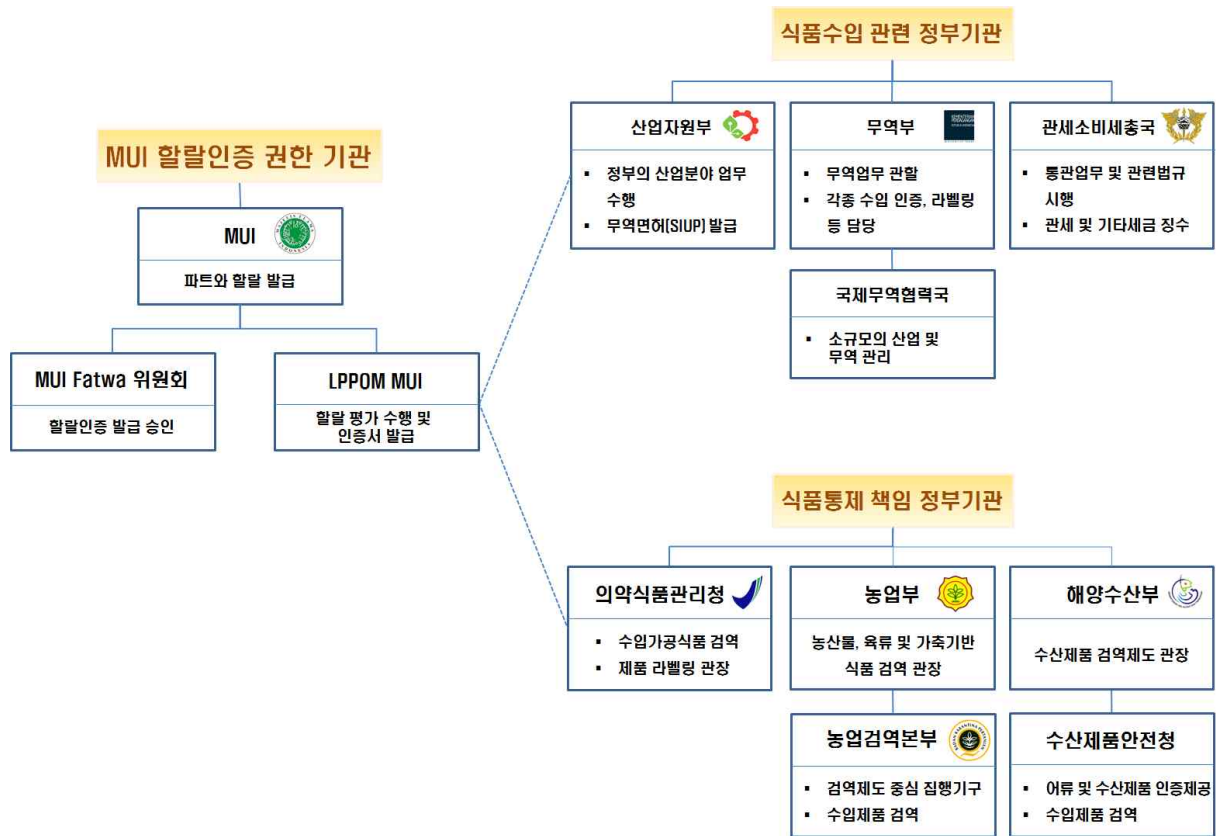
농림축산식품부

KFRI

한국식품연구원

1. 식품수입 관련 정부기관 및 임무

- 해외로부터 인도네시아 관세지역에 도착하는 모든 물품은 “수입”으로 간주되며, 수입관세의 대상이 됨.
- 인도네시아의 수입절차는 여러 정부기관의 수입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복잡한 편임.
- 인도네시아 무역은 관세소비세총국(DGCE)과 무역부(Ministry of Trade)에서 전반적으로 관할함.
- 인도네시아에 수입되는 식품의 무역 업무뿐만 아니라 통관, 검역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다음과 같음:



<그림 1> 인도네시아 식품수입 관련 정부기관 및 주요 임무

<표 1> 인도네시아 식품수입 관련 정부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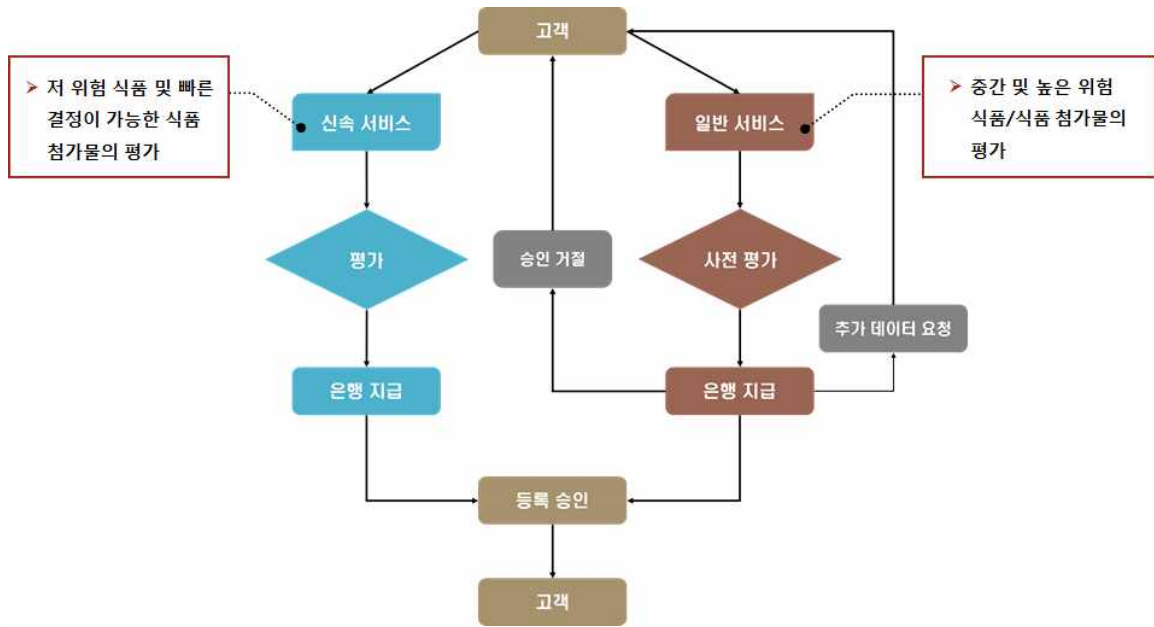
기관		주요 임무
식품수입 관련 정부기관	산업자원부 (Ministry of Industry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부의 산업분야 업무 수행 • 무역면허(SIUP) 발급
	무역부 (Ministry of Trade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무역 업무 관할 • 각종 수입 인증, 라벨링 등 담당 • 원산지 규정 관련 규정발표 관할
	국제무역협력국 (Directorate General of International Trade Cooperation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규모 산업 및 무역 관리
	관세소비세총국 (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: DGCE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통관업무 및 관련법규의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물품 수입에 필요한 서류 및 실물제품에 대한 검사 등 확인 •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징수 업무 책임
식품통제 책임 정부기관	의약식품관리청 (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도네시아에 수입되는 가공식품의 검역 및 제품 라벨링 관장 • 할랄인증 제품에 한해 할랄 라벨링 승인
	농업부 (Ministry of Agriculture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도네시아에 수입되는 농산물 및 육류, 가축 관련 식품의 검역 관장
	농업검역본부 (The Agency for Agriculture Quarantine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림부 산하기관으로 검역제도 중심 집행기구이며, 인도네시아 출입소에서 수입제품의 검역 담당 • 국내식물검역통과증명서 발급
	해양수산부 (Ministry of Marine Affairs and Fisheries Republic of Indonesia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산물 관할 부서로서 산하 검역, 품질관리 및 수산제품안전청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수산제품의 검역제도 관장
	수산제품안전청 (Fish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류의 건강 및 품질 뿐만 아니라 수출 및 수입에 관련한 모든 수산제품의 안전 보장 • 어류 및 수산제품의 인증 제공

2. 제품등록(ML)

- 국내에서 생산 혹은 무역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영토로 수입한 모든 가공 식품은 유통에 앞서 등록 승인서를 획득해야 함. 이것은 안전, 품질, 영양 및 라벨링에 대해 현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- 등록 절차는 가공식품 등록에 있어 의약식품관리청(BPOM) 법령 No. HK03.1.5.12.11.09955/2011, No. HK03.1.5.12.11.09956/2011, No.42/2013, 및 No.43/2013과 관련이 있으며, 이것은 GOI 규정 No 20/2004를 위한 이행 규정임.
- 의약식품관리청(BPOM) 규정 No.1/2013은 각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등록 절차(e-등록)를 통해 등록해야함을 설명함.
- 다음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은 제품등록 승인을 받아야 함.
 - 상온에서 7일 이하의 유통기한을 가진 가공식품
 - 정부 또는 사회기관에 대한 기부행위의 가공식품
 - 의약식품관리청(BPOM) 등록, 연구 혹은 개인섭취 등과 같은 특수목적을 위해 수입되는 소량의 가공식품
- 모든 수입 가공식품, 가공식품 재료, 식품 첨가물, 가공 보조제, 식품 재료 및 기타 모든 제품은 매 선적마다 의약식품관리청(BPOM) 본부로부터 입국허가(SKI)를 받거나 혹은 6개월마다 우선 서비스를 받아야 함.
 - BPOM은 6개월 동안 특정 양과 빈도로 수입한 기록이 있는 수입업체에게 6개월의 유효기간과 평가 없이 온라인 신청 처리를 통해 SKI를 발급하는 우선 서비스를 제공함.
- 등록과 관련된 처리는 현지기업 혹은 수입업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, 소요 기간 및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수치보다 높은 편임.
 - 등록된 제품의 포장디자인, 표기내용 등이 조금이라도 변경된 경우, 재등록이 필요하며,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됨.
 - 식품 제조/공급 및 제품 샘플에 대한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등록 처리를 위해 필요함.

가. 등록평가 절차

- 인도네시아 BPOM의 식품 등록평가는 일반 및 신속 서비스 두 종류로 나뉨:
 - **(일반 서비스)** 중간 및 높은 위험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의 평가
 - **(신속 서비스)** 저 위험 식품 및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한 식품 첨가물의 평가



<그림 2> 인도네시아 BPOM 식품 등록평가 절차

※ 자료: GAIN Report(2015),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- Narrative

- 등록 승인 또는 거절의 발행에 대한 처리 소요기간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, 이는 다음과 같음:

<표 2> 품목별 등록평가 처리 소요기간

식품 종류	Timeline(최대)
• 특정 목적을 위한 식품	150일
• 기능성 식품, 요구 식품, 허브 포함 식품(의료용 식물 포함)	120일
• 방사능 처리 식품, GMO, 식품 첨가물(맛), 유기 식품, 우유 및 유제품, 생선 및 생선제품, 주류	100일
• 다른 맛 식품 첨가물, 기타 유형 식품	60일

나. 수입제품 요구사항

1) 관리 요구사항

가) 무역면허(SIUP) 등록

- 인도네시아에서 교역활동을 수행하려는 회사는 무역면허(SIUP)를 먼저 등록해야 함.

나) 관세청 등록번호(NIK) 발급

- 「관세청 등록관련」 규정에 따라 모든 수입업체, 수출업체 및 관세청 이용자는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(DGCE)으로부터 관세청 등록번호(Nomor Identitas Kepabeanan: NIK)를 발급받아야 함.



다) 수입자 등록번호(API) 필수

- 관세청 등록번호(NIK)와 더불어 수입자 등록번호(Angka Pengenal Impor: API)가 필수적으로 요구됨. 현재 2타입의 API로 구분되며, 유효기간은 5년임.
 - 한국의 수출업체들은 인도네시아 업체와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협력하려는 수입업자의 API를 확인할 것을 권장함.

API 타입	사용자(산업)
API-U (무역 수입 허가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산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 한하여 발급 • 주로 무역, 유통, 건설 업종에 발급되는 수입허가서
API-P (제조업 수입 허가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산설비를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발급

※ 자료: Indonesia Import Procedure,
<http://import-procedure.blogspot.kr/2012/04/indonesia-operview.html>

2) 기술 요구사항

- 재료 목록
- 제조 공정 또는 GMP/ HACCP/ ISO22000 인증
- 공인 실험실에서 발행한 완제품 분석 인증서
 - 화학 및 미생물 오염 물질, 특정 식품 첨가물 등
- 유효기간 정보, 생산코드 정보 및 라벨 디자인(색상)

3) 추가 요구사항

- 상표 증명서(제품에 대한 TM 및 혹은 라벨에 ® 로고)
-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(SNI)의 제품 인증서
 - (국가표준 필수제품) 물, 밀가루, 요오드 소금, 코코아 분말, 정제 설탕, 흰 설탕 및 팜 오일로 만든 팜 식용유
- 유기 인증(유기농 제품)
- GMO-Free에 대한 상태(콩, 옥수수, 감자 및 토마토 사용 제품)
 - 지방이나 오일(레시틴 포함)과 같이 고온에서 다수의 정제과정을 거친 제품 유도체는 non-GMO 진술서가 필요 없음.
- 식품 방사능 조사에 대한 진술서(방사능 조사 식품)
- 알코올음료에 대한 등록된 수입자로서 위촉장
- 라벨의 모든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기준

다. 실험¹⁾

- 정부규제(PP) No.28/2004-식품 안전, 품질 및 영양을 기반으로, 실험실 검사는 정부 실험실 또는 국가 인증 위원회에서 인정한 실험실 혹은 인증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함.
- 의약식품관리청(BPOM)은 유통 전 검토되어야 하는 가공 식품의 유형을 결정하도록 허가되었기 때문에, 모든 제품은 의약식품관리청(BPOM)에서 지정된 시설에서 시험검사를 거쳐야 함.
 - 시험검사 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처리되며, 비용은 품목당 IDR 50,000~IDR 2,500,000/ 제품당 IDR 1,000,000~IDR 10,000,000 정도에 이릅니다.

3. 수입절차에 필요한 기타 요구사항

가. 제품등록번호(ML Number)

- 소비자보호법(1999)에 따라 모든 수입제품은 의약식품관리청(BPOM)에 등록해야 함.
- 수입제품은 통관 이전에 의약식품관리청(BPOM)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, 해당 스티커가 부착되어야 함.

1) 자료: 의약식품관리청(BPOM) 공식 웹사이트, <http://www.pom.go.id/new/>

- 모든 검토가 완료된 이후, 의약식품관리청(BPOM)에서는 다음 서류를 발급함.
 - (Form M1) 제품등록신청이 승인이 된 경우
 - (Form M2) 제품등록신청이 조건부로 승인이 된 경우
 - (Form M3) 제품등록이 거부된 경우

나. 특정제품 수입 등록서(Importir Terdaftar Produk Tertentu: ITPT/ Registered Importer of Certain Products)

- 무역부에서 발급하며, 지정된 특정 제품군은 정부가 지정한 8대 항구 및 5대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함.

지정 제품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식음료 제품, 의류, 신발류, 전자제품, 장난감, 허브관련 제품 및 전통 의약품, 화장품
지정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Dumai항, Jayapura항, Tarakan항 • 음·식료품만 수입 가능

- 선적 전 검사²⁾ 보고서를 첨부해야만 수입 통관 집행이 가능함(단, 화장품은 선적 전 검사 예외 품목).
 - Tanjung Perak 홈페이지(<http://peraturan.bcperak.net>) 또는 Trade Related Rule Book(<http://protraf.net/rulebook>)에서 관련 규정 확인 및 준비가 필요함.

4. 농수산물식품 쿼터

가. 원예작물

- 수입 전 쿼터 신청을 해야 하며, 쿼터 신청은 1년에 반기별로 신청함.
 - 쿼터 신청 대상품목은 [부록 3] 참조
- 신청절차는 아래 표에 명시된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INATRADE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함.
 - 원예작물의 경우, 유통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유통 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함.

2) Surveyor가 선적장에서 해당물품 검사 → Surveyor Report(LS) 발행 → 수입 통관 시 LS 제출

신청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예품목 수입등록서(무역부 발급) • 원예품목 수입추천서(농업부 발급) • 수입 승인서(무역부 발급) • 무역판매업허가증(SIUP) • 세무번호(NPWP) • 수입허가서(API) • 창고허가증(Sertifikat Gudang) • 차량운행증(STNK) · 차량등록증(BPKB) • 유통계약서
------	--

나. 어류 및 수산물 쿼터

- 어류 및 수산물은 모든 품목이 쿼터 대상이며, 쿼터 허가 후 6개월 이내에 쿼터를 받은 식품을 수입해야 함.
- 한국의 경우, 김, 미역 등이 쿼터 대상 품목임.

<표 3> 어류 및 수산물 쿼터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

신청절차	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지방 수산부 (Dinas Provinsi Perikanan) </div> <div style="margin: 0 10px;">⇒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해양 수산부 (Kementerian Kelautan dan Perikanan) </div> </div> <div style="margin-top: 10px; text-align: center;"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width: 100%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 width: 45%;"> 신청 서류 신청 ⇒ 추천서 발급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 width: 45%;"> 해당 추천서를 쿼터 신청 </div> </div> <p>※ 쿼터 신청 시, 생선 그림과 수입량을 기재한 서류 추가로 필요함.</p> </div>
신청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장(구장) 추천서 • 무역등록증(TDUP), 생선 임시 검역증(IKIS), 세금공제서(SKP), 무역 판매업 허가증(SIUP), 세무번호(NPWP) • 레스토랑 및 호텔 주문내역서 • 자카르타 주정부 추천서 • 해양부 수입승인서

5. 수입절차

-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, 수입하는 제품에 따라 특정 면허 및 허가가 필요함.
 - 의약식품관리청(BPOM) 및 MOA(농업부)로부터 수입 권고를 획득하기 위한 수입허가를 신청함.
- 세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입업체는 수입허가 획득을 위해 무역부에 등록함.



<그림 3> 인도네시아 수입절차 흐름도

* BPOM: 의약식품관리청/ MOI: 산업자원부/ MOA: 농업부/ MOT: 무역부/ SKI: BPOM으로부터 입국 허가

※ 자료 : GAIN Report(2015),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- Narrative

[부록 1] API-U(무역 수입 허가서) 면허 양식

KEMENTERIAN PERDAGANGAN
Jalan M. Hoesni Saleh No. 8, JAKARTA 10110
Telp. 021-382171, Fax. 021-382191

No. : U/021834

DINAS KOPERASI, USAHA MIKRO, KECIL DAN MENENGAH DAN PERDAGANGAN PROVINSI DKI JAKARTA
ANGKA PENGENAL IMPORTIR - UMUM (API-U)
NOMOR : 090609334-P

Berdasarkan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27/M-DAG/PER/5/2012 tanggal 1 Mei 2012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59/M-DAG/PER/9/2012 tanggal 21 September 2012 tentang Ketentuan Angka Pengenal Importir (API) serta memperhatikan Berita Acara Pemeriksaan (BAP) KASUDIN KOP, UMKM DAN PERDAGANGAN KOTA ADMINISTRASI JAKARTA TIMUR Nomor 300/BAP/IX/2013 tanggal 10 September 2013 diberikan Angka Pengenal Importir Umum (API-U), kepada :

Nama/Bentuk Perusahaan	: CV. SAE MITRA SEJATI
Alamat Kantor Pusat	: J.L. AMO 28 RT.003/025, KEL. BALEKAMBANG, KEC. KRAMAT JATI, JAKARTA TIMUR
Nama Penanggung Jawab	: EVANS TOGAP SARITUA S.
Telepon	: 021 - 46529327
Faksimil	: 021 - 46529327
Nomor Akte Notaris/Perubahan	: 11
Nomor izin usaha di bidang Perdagangan atau izin usaha lain yang sejenis	: 5181713-1.824.51
Nomor TDP	: 09.04.3.46.13555
NPWP	: 02.995.457.5-005.000
Nomor Surat Keterangan Domisili/ Siswa Kontrak	: 117/1.824.1/13
Nomor Referensi dari Bank Devisi	: 4.HB.JPR/CO.COND/0888/2013
Jenis bagian barang yang dapat diimpor	: BAG XVII[HS NO. 9001s/d9209]

API berlaku selama Importir masih menjalankan kegiatan usahanya dan wajib melakukan registrasi setiap 5 (lima) tahun sekali.

Jakarta, 19 September 2013

KEMENTERIAN PERDAGANGAN
PIMPINAN PALA DINAS KOPERASI, USAHA MIKRO, KECIL DAN MENENGAH DAN PERDAGANGAN PROVINSI DKI JAKARTA


M. NANDI BASO M. MM
NIP. 19560805 198709 1 001

Tembusan:

1. Direktur Impor, Dijon Daglu;
2. Direktur Bank Indonesia/ULN;
3. Direktur Teknis Kepabeanan Bea dan Cukai, Kementerian;
4. Ka Dinas Perindag Kab/Kota;


16036426264

[부록 2] 쿼터신청 대상품목

HS CODE	품목
07.01	감자(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)
0701.90.00.00	감자(종자용 이외 기타)
07.03	양파·쪽파·마늘·파(leek)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(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)
0703.10	양파와 쪽파
07.06	당근·순무·샐러드용 사탕무뿌리·선모(仙茅)·셀러리·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(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)
0706.10	당근과 순무
07.09	그 밖의 채소(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)
0709.60	고추류(캐프시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)
0709.60.10.00	단고추(벨타입에 한함)
07.10	냉동채소(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)
08.03	바나나(플랜틴/plantain을 포함하며,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)
0803.10.00.00	바나나(즉시 섭취 불가능한 것)
08.04	대추야자·무화과·파인애플·아보카도(avocado)·구아바(guava)·망고(mango)·망고스틴(mangosteen)(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)
0804.30.00.00	파인애플
0804.50	구아바·망고 및 망고스틴
0804.50.20.00	망고
08.05	감귤류의 과실(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)
0805.10	오렌지
0805.10.10.00	오렌지(신선)
0805.20.00.00	멘더린(탄제린 및 샷수마 포함)·클라멘타인·윌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
0805.40.00.00	포도류(포멜로우 포함)
0805.50.00.00	레몬(시트리스 리몬 및 시트리스 리머늄)과 라임(시트리스 오란티폴리아 및 시트리스 라티폴리아)
0805.90.00.00	기타
08.06	포도(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)

<표 계속>

<표 계속>

HS CODE	품목
0806.10.00.00	포도(신선)
08.07	멜론(수박 포함)과 파파야(papaya)(신선한 것으로 한정)
0807.19.00.00	기타
0807.20	파파야
08.08	사과 · 배 · 마르멜로(quince)(신선한 것으로 한정)
0808.10.00.00	사과
08.10	그 밖의 과실(신선한 것으로 한정)
0810.60.00.00	두리안
0810.90	기타
0810.90.10.00	감
20.01	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 · 과실 · 견과류와 그 밖의 식 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
2001.90	기타
2001.90.10.00	과실과 견과류
20.04	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(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 고,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,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) ※ 2006호: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 · 과실 · 견과류 · 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(물을 빼 것,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)
2004.10.00.00	감자
20.05	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(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 고, 냉동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,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)
2005.20	감자
20.07	잼 · 과실젤리 · 마멀레이드(marmalade) · 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(puree) · 과 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(paste)(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,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 상관없음)
2007.91.00.00	감귤류의 과실
20.08	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·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)
2008.20.00.00	파인애플

<표 계속>

<표 계속>

HS CODE	품목
2008.30	감귤류 과실
2008.30.10.00	유자
2008.99	기타
2008.99.20.00	사과
20.09	과실 주스(포도즙 포함)와 채소 주스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,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)
2009.29.00.00	기타
2009.39.00.00	기타(레몬 및 라임 주스)
2009.41.00.00	기타(파인애플 주스) 당도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
2009.69.00.00	기타(포도 주스)
2009.71.00.00	기타(사과 주스) 당도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
2009.79.00.00	기타(사과 주스)
2009.90	혼합 주스 (과실, 오렌지, 사과, 포도, 채소, 기타)
2009.90.90.00	기타
21.03	소스와 소스용 조제품, 혼합조미료, 겨자의 고운 가루·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
2103.90	기타
2103.90.10.00	장류(된장, 춘장, 고추장)

※ 자료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2013),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-대만·인도네시아